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2년 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○ 우리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가 조례로서 권리 관계가 법제상 이치에 맞지 않아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군수로 개정하고

○ 문화예술회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

○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운영, 사용허가, 입장의 제한 등에서 관장으로 되어 있는 운영주체를 군수로 함
(안 제4조, 제6조～제10조, 제13조, 제15조, 제17조～제19조)

○ 문화예술회관 전시실의 전시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조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 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(1) 개정조례안 : 붙임

(2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3) 입법예고(2012. 3. 28 ~ 4. 17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문화예술회관장(이하 “관장”이라 한다)은”을 “성주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관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관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하며, 같은 항 제6호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8호 중 “관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관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9조 후단 중 “관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및 제6항 중 “관장은”을 각각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관장”을 “군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“관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15조 단서 중 “관장”을 “군수”로 한다.
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관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제18조제1항 중 “관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제19조제1항 중 “관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위탁운영) ①문화예술회관장(이하 "관장"이라 한다)은 예술회관을 운영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수 있다.	제4조(위탁운영) ①성주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는----------.
② 삭 제	② 삭 제
제6조(사용허가) ①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.	제6조(사용허가) ①---------- 군수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예술회관사용허가의 범위는 제2조 각호의 경우와 관장이 내용상 예술회관에서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로 한다.	③---------- 군수가 ----------.
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예술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	제7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군수는 ----------.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②제6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한다. 다만,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.	②----------. -------- 군수가 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전시회 : 10일 이내	6. ---------- 20일 ----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: 3일 이내	8. ----- 군수가 ----------
제8조(허가취소 등)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·변경,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	제8조(허가취소 등) 군수는 ----------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기타 공익목적을 위하여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	5. ---------- 군수가 ----
제9조(사용시간) 예술회관의 공연장 등 사용시간은 9시부터 22시까지로 하며, 전시실사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.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	제9조(사용시간) ----------
제10조(사용료) ①·② (생 략)	제10조(사용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검인금액의 100분의 10(영화의 경우에는 100분의 20)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용 종료 후 정산할 수 있다.	③군수는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
⑥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	⑥군수는 ----------.
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.	제13조(사용자의 설비) ①---------- 군수----------.
②관장은 예술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.	②군수는 ----------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장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	④---------- 군수가 ----------. ----------.
제15조(권리의 양도금지) 예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 다만, 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제15조(권리의 양도금지) ----------. -- 군수----------.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입장의 제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람자의 경우에는 관장은 예술회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	제17조(입장의 제한) ---------- ---------- 군수는 ----------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홍보물 게첨) ①사용자가 각종행사, 공연, 전시회 등의 홍보물을 예술회관에 게첨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 할 수 있다.	제18조(홍보물 게첨) ①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군수가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9조(강사의 초빙) ①관장은 여성 및 사회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	제19조(강사의 초빙) ①군수는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